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□ 존경하는 채 인 묵 위원장님!

그리고 선배 · 동료 의원님 여러분!

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2선거구 출신 서윤기 의원 입니다.

「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□ 본 개정안의 제안 이유는,

○「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」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함입니다.

□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가. '자매결연'을 '상호결연'으로 함(안 제5조, 제5조제1항, 제5조제2항, 제6조, 제7조, 제9조 및 제10조).

나. ‘자매도시’를 ‘상호결연도시’로 함(안 제5조, 제8조, 제13조 및 제22조).

다. ‘자매우호도시’를 ‘상호우호도시’로 함(안 제13조 및 22조).

□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위원님 여러분!

○ 본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